

가점평정 기준표(제5조의2 관련)

가점 항목	부여기준	점수	비고
「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」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지역 근무경력	10개월 이상 1년 10개월 미만	1.0점	특수지 근무경력의 산 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 로 한다.
	1년 10개월 이상	2.0점	
※ 비고: 특수지 다지역 근무경력의 경우, 해당 경력을 2로 나누어 산정한다.			